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2. 14. (목)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1. 7. 김육영 의원 외 14명 발의(의안번호 230호)

나. 회부일자: 2023. 11. 1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11. 21.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육영 의원)

가. 제안이유

-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는 장애인생산품의 범위를 중증장애인 생산품 중심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 기업 제품까지 확대하여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변경(안 제1조~제2조)
- 적용범위 추가(안 제3조)
- 우선구매 대상물품 지정(안 제6조)
-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안 제7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1. 07. ~ 2023. 11. 13.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요

○ 본 개정안은「장애인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장애인기업제품〉을 우선구매 범위에 추가하여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소득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와 제2조, 제3조, 제6조제1항은「장애인복지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개정으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 조문을 정비 한 것이며, 장애인 생산물품 우선구매 범위에〈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장애인기업제품〉을 추가함에 따라 각 조문에 이를 반영하였음.

○ 안 제5조제2호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1) 공공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출자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국가재정법」 제6조의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를 말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를 말한다)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교육기관

구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을 삭제하였고, 안 제5조제3호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성북구도시관리공단과 성북구의회를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대상기관에 추가하였음.

- 안 제6조 및 제7조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을 정비하고「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등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구매목표비율과 우선 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 그 밖에 개정안은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것임.

다.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본 개정안은「장애인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및「장애인기업 활동 촉진 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을 우선구매 대상으로 조례에 추가 하여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 적극적인 구매촉진 등을 위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명시하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의 책무성을 높인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 됨.

참고자료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28조 개정 전·후 비교〉

개 정 전	개 정 후
「장애인복지법」 제44조(생산품 구매) ①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 소요물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과 물량 의 범위 안에서 매년 그 품목과 물량을	「장애인복지법」 제44조(생산품 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 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 생산을 의뢰하여야 하며,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으면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품목과 물량을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며, 수의계약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생산품 구매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별표 3에 해당하는 물품 및 물량의 범위에서 국가등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할 물품(이하 “우선구매대상물품”이라 한다)의 품목 및 물량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우선구매비율은 우선구매에 드는 금액이 국가등이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해당 품목의 총 구매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⑤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는 우선구매대상물품을 공급할 때에 국가등이 요구하는 품질의 기준을 충족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⑥ 법 제44 조제2항에 따라 국가등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은 제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삭제>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물품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1.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해당 물품의 최종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생산할 것. 이 경우 다른 업체 등에 하도급을 주거나 위탁하여 생산하거나 물품의 부품만을 생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물품의 생산과정에 장애인 5명 이상이 참여할 것

3. 물품의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70 이상이 장애인일 것[「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 1명은 일반장애인의 1.5배수로 산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등과 그 품목을 고시하고,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그 품목을 생산할 때에 계속하여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물품을 생산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거나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

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선 구매대상물품의 원활한 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구매신청의 접수와 납품을 대행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시설간 생산량 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장애인복지단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	--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2. 14. (목)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1. 7. 경수현 의원 외 7명 발의(의안번호 231호)

나. 회부일자: 2023. 11. 1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11. 21.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경수현 의원)

가. 제안이유

- 기존 조례가 고독사의 원인을 1인 가구의 증가로 한정하여 사회 내 1인 가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주고,
- 1인 가구가 아닌 고독사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한계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성북구도 고독사 예방의 대상을 확대하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문제를 범사회적으로 고찰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인 가구에 대한 정의와 내용을 삭제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내용으로 변경함.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8조)

-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와 내용을 규정함. (안 제2조, 안 제8조)
- 예방 및 지원사업에 취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규정함. (안 제9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1. 07. ~ 2023. 11. 13.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요

- 본 개정안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고독사예방법”) 개정(23. 6. 13. 시행)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고독사 예방사업의 기반 강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추가 하는 등 사업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23. 6. 13. 시행된「고독사예방법」개정 취지는 창신동 모자, 수원 세모녀 사건 등 1인 가구가 아닌 경우에도 고독사가 발생하는데,「고독사예방법」은 홀로 사는 사람, 즉 1인 가구로 고독사 대상자를 한정하는 등 현행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고독사 대상자를 1인 가구로 한정하는 문구를 개정하여 가구 유형이 아닌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에 중점을 두어 대상자가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23. 6. 13. 시행된 「고독사예방법」 개정 전·후〉

개 정 전	개 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u>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u>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u>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u>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3. 6. 13.〉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고독사예방법」개정 취지에 맞춰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의 1인 가구 용어를 삭제하고 조문 중 ‘홀로 사는’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으로, ‘혼자 임종’을 ‘임종’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고립 가구의 정의 보완을 위해 ‘은둔형 외톨이’ 명칭을 추가하였음.
- 안 제8조는 안 제2조의 정의 규정에 ‘은둔형 외톨이’가 추가됨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고, 안 제9조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에 취업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등 맞춤형 지원을 추가하였음.

다.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본 개정안은「고독사예방법」개정(23. 6. 13. 시행)으로 ‘고독사’의 정의가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고독사 예방사업의 기반 강화를 위해 상위법령에 근거한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등 사업 활성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바,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2. 14. (목)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1. 7. 정윤주 의원 외 12명 발의(의안번호 232호)

나. 회부일자: 2023. 11. 1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11. 21.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정윤주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의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방사능 오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
- 정보공개와 교육 및 홍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안 제9조)

- 유해물질 검사를 위한 관계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0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식품위생법」
-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1. 07. ~ 2023. 11. 13.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요

- 본 제정안은 성북구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의 오염 유해
물질로부터 안정성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임.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0조제2항²⁾에 “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생산·
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3호나목³⁾
에서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에
예시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수산물의 안정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됨.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생산·유통되
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
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와 제2조, 제3조에서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수산물, 유해물질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 안 제5조와 제6조는 구청장에게 성북구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7조는 구민, 구 소재 시민단체 등이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명시하였으며,
- 안 제10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 검사를 관계기관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본 제정안은 해양오염 등의 문제로 인하여 수산물에서 검출되는 중금속, 잔류농약, 방사성물질 등 유해성분 검출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성북에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와 품질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 되며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사항

○ 타시도 조례 제정 현황 (6곳)

자치단체	자치법규명	제정일자
군포시	경기도 군포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	'23. 09. 27.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	'23. 09. 27.
사천시	경상남도 사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	'23. 09. 21. 일부개정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	'23. 10. 04.
가평군	가평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	'23. 11. 08.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	'23. 11. 09.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2. 14. (목)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1. 7. 경수현 의원 외 8명 발의(의안번호 233호)

나. 회부일자: 2023. 11. 1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11. 21.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경수현 의원)

가. 제안이유

- 2022년 서울특별시 합계출산율이 전국 최하위인 0.59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는 등 심각한 저출산 상황임.
- 서울특별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다자녀의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함.
- 이에 서울특별시 자치구인 성북구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관한 다자녀 기준 완화 및 다자녀 가족 지원 대상의 여성복지시설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인 사람도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함. (안 제6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1. 03. ~ 2023. 11. 13.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요

- 본 개정안은 서울시 다자녀 기준 완화 및 공공시설 감면 혜택 확대 정책을 반영하여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여성복지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현행 조례에서는 여성문화센터 등 여성복지시설 사용료 감면율이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만18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20%, 3명 이상인 경우 50%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것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모두에게 50% 할인을 적용하여 다자녀 혜택 기준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면대상 확대 시 2,113만원 수입 감소가 예상됨.

여성복지시설 감면을 일부 개정				
구분	현 행		개 정(안)	
	감면대상	감면율	감면대상	감면율
여성복지시설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18세 이하의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	100분의50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100분의50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18세 이하의 자녀가 2인 이상인 가정	100분의20		

사용료가 감면되는 시설 및 감면을 일부 개정

시설명	수강료	2023 연간 수강료 수입	2023 다둥이 할인 현행	감면 확대 시 세입 감소 예상
성북여성교실	강좌별 10,000원	6,685천원	115천원	-60천원
성북여성취업 교육센터	강좌별 10,000원~50,000원	24,228천원	542천원	-615천원
성북여성문화센터 (여성회관)	강좌별 30,000원~40,000원	156,891천원	32,190천원	-20,457천원
총 계		187,804천원	32,847천원	-21,132천원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서울시의 다자녀 혜택 기준을 확대하는 정책 기조에 맞춰 감면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최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2. 14. (목)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1. 7. 이용진 의원 외 10명 발의(의안번호 234호)

나. 회부일자: 2023. 11. 1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11. 21.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용진 의원)

가. 제안이유

- 심화되는 저출산 상황에서 다자녀가정의 혜택 기준을 완화하여 양육부담을 해소하고,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북구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로 나이 제한을 삭제함.(안 제2조제5호)
-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5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안 제14조제4항, 안 제16조제1항, 안 제20조제3호)
- 출산 장려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공헌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28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1. 03. ~ 2023. 11. 13.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요

- 본 개정안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며, 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북구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제5호는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출산 또는 입양으로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을 “출산 또는 입양으로 양육하는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으로 조문을 변경한 것으로, 이는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확립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의 개정된(2023. 6. 28. 시행) 사항과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반영하여 정의 규정을 정비한 것이며,

〈다자녀가정 정의 규정 비교〉

현 행	개 정 안	서울시 조례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양육하는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다자녀가족”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

- 안 제15조는「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8조제1항⁴⁾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을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등으로 구체화 것임.
- 안 제28조는 출산 장려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밖에 안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 제20조제3호는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것임.

다.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본 개정안은 다자녀가정 기준을 정비하고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05)

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의결·협의·자문 등(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으로 심의 등을 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2. 14. (목)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1. 7.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208호)

나. 회부일자: 2023. 11. 1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11. 21.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임근수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영장례를 치르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과 사별자의 애도할 권리를 보장하고, 우리구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영장례 조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지원내용, 지원방법 및 신청과 결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7조)
- 점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입법예고
 - 기 간 : 2023. 09. 27. ~ 2023. 10. 17.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요

- 본 제정안은 가족해체·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최소한의 장례식을 지원하여 고인의 존엄성 유지 및 사회적 책무 이행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가 2012년 1,025명에서 2021년 3,488명으로 10년간 3배가 넘게 증가하는 등 그 수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우리구의 경우에도 2017년 11명에서 2023년 48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20년 이후 무연고 사망자 140명 중 101명인 72.1%가 저소득 무연고 사망자로 경제적인 부담으로 시신 인수 거부·기피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성북구 무연고사망자 현황〉

(2023. 10월 기준)

구 분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계		48	42	32	35	11	5	11
무연고	일 반	9	11	12	11	10	3	-
	저소득	39	31	20	24	1	2	-



- 따라서 본 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일 경우 등 공공의 지원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됨.

나. 주요내용

- 본 제정안은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영장례’, ‘연고자’, ‘무연고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 및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을 무연고 사망자, 저소득층 사망자, 고독사로 사망한 자,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 구속·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거나 구청장이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공영장례 지원의 수준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지원 방법으로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현금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화장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7조는 무연고자 이외의 연고자는 공영장례를 지원받으려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장례계획을 구청장이 확인·조사 후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8조는 연고자가 공영장례의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조사·점검과 함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영장례지원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본 제정안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⁵⁾일부개정⁵⁾(2023. 3. 29.)으로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고인의 존엄성 유지 및 사회적 책무 이행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며,
- 특히 무연고 사망자뿐 아니라 보호자의 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경우 연고자가 구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례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하여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 됨.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8., 2023. 3.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23. 3. 28.>

④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28.>

⑤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2023. 3. 28.>

⑥ 시장등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2. 14. (목)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1. 7.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209호)
- 나. 회부일자: 2023. 11. 14.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11. 21.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임근수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을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발급대상자 관련 조항 수정(안 제3조)
 - 발급 대상을 해당 연도에 13세, 16세가 되는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에서 13세가 되는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변경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 예산조치 :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
- 입법예고
 - 기 간 : 2023. 09. 27. ~ 2023. 10. 17.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요

- 본 개정안은「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결과에 따라 동행카드 지원대상을 변경하려는 것임.
-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2항⁶⁾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보건복지부 검토의견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근거, 협의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 ‘재협의’
 - 보편적 현금복지를 지양하고 선별복지·약자복지를 강화하는 정부 복지 기조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 다자녀 등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될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기준 재검토

나. 주요내용

- 본 개정안은 해당 연도에 만 13세(중학교 1학년)가 되는 청소년에게 연간 1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던 동행카드의 지원대상을 학령전환기에 있는 만 16세(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까지 확대 지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결과 “대상자 선정기준 재검토 필요”하다는 의견을

6)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제시함에 따라 동행카드 지원대상을 기존 13세(중학교 1학년) 청소년으로 변경하려는 사항임.

동행카드 지원 및 추진경과

동행카드 지원개요

- 사업기간 : 2023. 1. 1 ~ 12. 15.(매년 시행)
- 사업대상 : 6,600여명
 - 성북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해당 연도에 13세, 16세가 되는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생
- 지원금액 : 연간 10만원 포인트(상·하반기 각 5만원)
- 소요예산 : 628,890천원(2023년 기준)

추진경과

- 2016. 6.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서 제출
- 2017. 2.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최종 동의
- 2017. 5.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조례 제정
- 2017. 6. : 2017년 동행카드 지원 사업 시작
- 2022.12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지원대상확대)
- 2023. 1. : 동행카드 지원대상 확대 시행
- 2023. 3. :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요청서 제출(성북구→보건복지부)
- 2023. 6. : 사회보장제도 변경 재협의 검토결과 회신(보건복지부→성북구)
- 2023. 6. : 협의결과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성북구→보건복지부)
- 2023. 8. : 검토의견에 대한 보건복지부 재협의 의견 유선상 회신(보건복지부→성북구)
- 2023. 9. : 사회보장제도 변경 재협의 검토결과 회신(보건복지부→성북구)

다.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본 개정안은「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청소년 동행카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 됨.
- 다만, 내년도 사업 시행을 앞두고 복지혜택이 축소·변경되어 혼선이 야기 될 수 있는바, 향후 사회보장사업 추진 시 사업예산 편성 전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2. 14. (목)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1. 7.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210호)

나. 회부일자: 2023. 11. 1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11. 21.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임근수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계절과 미세먼지 등 외부 환경의 제약 없이 어린이들이 생활권 내의 안전한 실내 놀이공간에서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제2조)

○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제8조)

○ 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제10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입법예고
 - 기 간 : 2023. 09. 27. ~ 2023. 10. 17.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요

- 본 제정안은 미세먼지 등 외부 환경에 제약 없이 어린이들이 생활권 내의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시설에서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형 실내 놀이시설 조성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아동복지법」제52조⁷⁾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중 하나로 아동전용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3조⁸⁾에서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노력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하고 있는바, 본 조례 제정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됨.

나. 주요내용

- 본 제정안은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린이’,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사용료’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7)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오락 시설, 교통시설, 그 밖의 서비스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익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③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안 제3조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 안 제4조는 서울형키즈카페 운영 매뉴얼 9)에 따라 놀이시설 이용대상을 9세 미만의 어린이와 보호자로 하고 있고,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는 인솔자 동반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사용료,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입장의 제한, 행위의 제한, 이용자의 의무에 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고, 놀이터의 기구를 훼손하였을 경우 이용자 배상에 관한 사항 등 일반원칙을 명시한 것으로 서울형 키즈카페의 운영매뉴얼의 일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적절함.
- 안 제9조와 제10조는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5년 이내에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본 제정안은 미세먼지, 폭염 등 어린이 야외놀이환경 악화로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외부환경의 제약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어린이들에게 연령에 맞는 다양한 놀이체험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 됨.
- 또한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놀이시설 설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됨.

9) 서울형키즈카페 운영 매뉴얼 P 20/21

가. 운영기준

1. 이용대상

- ▶ 0~만9세 아동 및 보호자(단, 놀이돌봄서비스는 만36개월 이상 아동 대상 제공)
 - 이용대상은 아래 명시된 ‘이용연령군 설정 방식’에 의거하여 구분
 - 단, 지역 수요 및 특성에 따라 0~만 9세 범위내에서 이용 연령을 제한할 수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2. 14. (목)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1. 7.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211호)

나. 회부일자: 2023. 11. 1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11. 21.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임근수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어린이가 안전한 공간에서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서울형 키즈카페」사업과 관련하여 놀이시설 확충을 위해 관내 민간 유휴공간을 발굴·연계하여 조성하는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2개소에 대하여 위탁운영을 추진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시설 :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2개소

연번	시설명	소재지(행정동)	시설규모	비고
1	서울형 키즈카페 성북구 성북동점 (하늘이음교회)	성북구 성북로4길 21 (성북동)	· 2층 일부 · 연면적 : 261.05㎡	무상사용기간 : 10년
2	서울형 키즈카페 성북구 정릉3동점 (벤엘교회)	성북구 숲샘로17길 8 (정릉3동)	· 1층 일부 · 연면적 : 213㎡	

○ 위·수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예정)

○ 위탁사무내용

-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운영
- 어린이와 보호자를 위한 다양한 놀이 및 소통 프로그램 운영
- 보호자 부재 시 긴급 놀이돌봄 서비스 지원

○ 수탁기관 선정 : 서울시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지침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예정) 제9조에 따라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다. 참고사항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예정)」
-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하“서울형 키즈카페”)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내용

- ‘서울형 키즈카페’ 성북동점, 정릉3동점이 2024년 5월 이후 개소 예정임에 따라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법인을 대상으로 지정 위탁하려는 것이며, 위탁계약 체결일로 5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위탁시설 현황 및 운영예산은 다음과 같음.

< 대상시설 현황 >

소재지	규 모	이용인원	운영방식	종사자	비고
성북로4길 21 (성북동)	- 2층 일부 (건물규모 5층) - 연면적 261.05㎡	- 회차당 20명	지정위탁운영 (하늘이음교회)	3명 (시설장1, 돌봄1, 안전1)	월~토 09:00~18:00
솔샘로17길 8 (정릉3동)	- 1층 일부 (총규모 지하2/지상3층) - 연면적 213㎡	- 회차당 17명	지정위탁운영 (벚엘교회)	3명 (시설장1, 돌봄1, 안전1)	월~토 09:00~18:00

< 2024년 성북구 공공형 어린이놀이시설 운영예산 >

구분	예산	인건비			운영비		
		계	시비	구비	계	시비	구비
하늘이음교회	128,323	107,323	76,860	30,463	21,000	17,000	4,000
벚엘교회	128,323	107,323	76,860	30,463	21,000	17,000	4,000
계	256,646	214,646	153,720	60,926	42,000	34,000	8,000

다. 법적근거 및 지정위탁의 적정성

- 「아동복지법」제53조¹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10) 「아동복지법」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오락 시설, 교통시설, 그 밖의 서비스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익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¹¹⁾에 '구청장은 실내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9조에 놀이기구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바,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

- 지정위탁에 관해서는 같은 조례 제9조제1항제2호¹²⁾에 놀이기구 설치 시 건물을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법인 또는 개인은 공개경쟁의 방식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한 바 본 놀이기구는 종교법인에서 10년간 무상 사용하게 한 경우이므로 지정위탁 운영은 적절하다 사료 되며,
- 위탁기간은 같은 조례 제9조제6항¹³⁾ 규정에 의거해 추진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 됨.

라.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민간위탁 조례」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고 있는 바, 본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됨.

③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가 주체적이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놀이공간 제공
2.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운영
3. 보호자의 돌봄 공백이 불가피할 경우 놀이돌봄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놀이기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놀이기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2. 놀이기구 설치 시 건물을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13) 제9조(위탁운영) ⑥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재계약할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2. 14. (목)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1. 7.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212호)
- 나. 회부일자: 2023. 11. 14.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11. 21.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임근수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조례에서 사용되는 명칭(‘치매안심센터’)이 조문에 따라 상이하여 상위법령인 「치매관리법」의 명칭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 및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이해를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명칭변경 : 치매지원센터→치매안심센터(안 제1조)
 - 「치매관리법」개정(시행 2018. 12. 13.) :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전문개정
 - 안 제1조 ‘치매안심센터’로 명칭 통일
- 법령 현행화를 위하여 종전의 「지역보건법」제9조를 「치매관리법」제3조로 변경함(안 제1조)
 - 조례 개정 당시(2015. 9. 30.), 「지역보건법」제9조(보건소의 업무) 였으나

법령 개정으로 현행 법령의「지역보건법」제9조(지역보건의료 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는 연관이 없어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 내용을 포괄하는「치매관리법」제3조(국가 등의 의무)로 변경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3조(업무)를 「치매관리법」 제17조제2항의 내용으로 변경(안 제3조)
- 자치법규 개정에 따라 제9조(준용)의「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안 제9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입법예고
 - 기 간 : 2023. 09. 27. ~ 2023. 10. 17.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요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치매관리법」개정에 따라 명칭 및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업무에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등이 신설된바,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는「치매관리법」제17조¹⁴⁾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치매지원센터”를

14) 「치매관리법」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4. 30., 2020. 12. 29.>

1. ~ 6.(생략)

6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치매안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종전 상위법령 인용 조문인 “「지역보건법」 제9조”를 “「치매관리법」제3조”¹⁵⁾로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화한 것이고,

- 안 제3조는 상위법령인「치매관리법」제17조 개정으로 센터의 업무에 장기요양 인정신청 등의 대리,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가 추가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며,
- 안 제9조는 자치법규 개정⁶⁾에 따라 준용 조문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 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한 것임.

다.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개정안은「치매관리법」의 개정으로 <치매지원 센터>가 <치매안심센터>로 바뀌고, 그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명칭과 센터의 업무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6의3.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6의4.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15) 「치매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2. 14. (목)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1. 7.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226호)

나. 회부일자: 2023. 11. 1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11. 21.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임근수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기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성북구 푸드뱅크·마켓센터’의 재위탁(재계약) 절차를 추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지속(재위탁 및 재계약)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위탁(재계약) 시설 현황

구 분	1호점	2호점
시 설 명	성북구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 일광복지재단	
소 재 지	성북구 아리랑로4길 22, 3층	성북구 오패산로 4, 1층
종사자수	3명	2명
관할지역	성북동 ~ 길음동	종암동 ~ 석관동
위탁기간	2021. 4. 7. ~ 2024. 4. 6.	2021. 4. 7. ~ 2024. 4. 6.

- 2021. 4. 1. 사회복지법인 일광복지재단 수탁 협약
- 2023. 11. 2. 사회복지법인 일광복지재단 재계약 의사 표명

○ 위탁기간 : 2024. 4. 7. ~ 2027. 4. 6. (3년)

○ 위탁사업의 범위

- 성북구 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수탁자 선정방법

-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평가 및 선정심의위원회의 적격 심의·의결을 통해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함.
- 단,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부적격 판정 시 공개모집 공고 후 신청 법인 적격 심사하여 재위탁 선정(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항목별 점수 합계 하여 최다득점자 선정)

다. 참고사항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제104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성북구푸드뱅크·마켓센터’(이하 “센터”라 함)의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재계약 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함)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내용

- 2024년 4월 6일자로 ‘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일광복지재단을 대상으로 운영 성과평가 및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3년간 재계약을 추진하려는 것이며 선정심의위원회 부적격 시, 공개모집 공고 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및 주요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성북구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현황 및 실적>

구분	소재지	연간사업비	위탁체	위탁기간	운영인력
성북구 푸드뱅크· 마켓센터 (1호점)	아리랑로4길 22, 3층 (132㎡)	총계 : 231,577천원 -인건비 : 188,594천원 -운영비 : 42,983천원	사회복지법인 일광복지재단	2021.4.7.~ 2024.4.6.	· 센터장 : 1명 · 직 원 : 2명
성북구 푸드뱅크· 마켓센터 (2호점)	오패산로 4, 1층 (82.02㎡)	총계 : 162,926천 원 -인건비 : 98,370천원 -운영비 : 64,556천원			· 직 원 : 2명

○ 기탁품 접수 및 배분 현황

(2023. 10월 말 기준)

구분	2022년	2023년
기부접수	6,680건 1,120,572천 원	5,886건 897,574천 원
배분	63,526건 1,262,571천 원	44,383건 986,548천 원

※ 서울시 광역푸드뱅크에서 기부물품을 인수하여 기부접수액보다 배분액이 큼

○ 이용자 현황

(2023. 10월 말 기준)

구분	2022년	2023년	비고
등록회원	787명	978명	월1회 이용
日 평균 이용인원	36명	44명	

다. 법적근거 및 지정위탁의 적정성

- 「지방자치법」제10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조례」제10조제2항 및 제3항¹⁶⁾에서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계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계약 추진은 절차상 적정하다고 사료 됨.
- 또한 ‘센터’의 관리 운영사무는 후원자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저소득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하는 사무로서 전문성 및 노하우가 요구되는 분야라는 점에서 재계약 추진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 됨.
- 위탁기간 및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조례」제7조 및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추진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 사료 됨.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계약체결 등)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제8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2.29.)

라.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민간위탁 조례」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재계약을 추진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법규 절차대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